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순 천 시 의 회 의



1. 심사안건

-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8. 3. 12. ~ 3. 16.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760호
----------	--------

- 발 의 자 : 허유인, 임종기, 신민호,
이옥기, 유영갑, 김병권,
최정원, 나안수, 이복남
- 발의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고, 전국광역시자치체 및 타시군에서도 시의원을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사전심의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어 조문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순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을 삭제
(안 제6조 제4항 제2호)

3. 개정규칙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전단 중 “시의원,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위촉직위원: <u>시의원, 민간전문가</u>,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 ⑥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1.(현행과 같음) 2.----- <u>민간전문가</u>,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2761호
----------	--------

- 발 의 자 : 허유인, 임종기, 신민호,
이옥기, 유영갑, 김병권,
최정원, 나안수, 이복남
- 발의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시의원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고, 전국광역시자체 및 타 지자체에서도 시의원을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사전심의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어 조문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의원” 을 삭제
(안 제2조제3항)

3. 개정규칙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시의회의원과 국·과장급공무원”을 “국·과장급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① ~ ② (생략)	제2조(구성)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u>시의회의원과 국·과장급공무원</u> , <u>전문분야 교수</u>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국·과장급공무원, ----- ----- -----.
④ · ⑤ · ⑥ · ⑦ (생략)	④ · ⑤ · ⑥ · ⑦ (현행과 같음)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상위법(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과 조례 개정 필요
- 상위법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표준조례(안) 권고를 참고하여 시대의 변화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명, 시행규칙명 개정
 - (명칭)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조례명)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시행규칙명)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표준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
 - (정의) 지속가능발전,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의 규정
 - (시장의 책무) ‘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및 ‘협의회 활동 지원’ 명시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시민의견 수렴, 지표 개발·평가, 실천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 등 협의회 기능 확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5. 관련부서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5. ~ 2018. 2. 26.)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18. 2. 26.(여성가족과-73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2.(전략기획과-1379)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5.(순천시 공고 제2018-287호)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순천21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순천시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중전의 제4조) 본문 중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2.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평가
3.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4.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5.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중전의 제6조)제5항제3호 중 “그린순천21지표사업 이행 및 평가”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그린순천21지표의 이행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을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한”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9조를 각각 제8조에서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수립 및 시행과 순천시·순천시의 회·시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u>그린순천21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u>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순천시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 -----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u>지방의제21</u>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u>제4조(기능)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전과 개발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정책·계획·제도 등에 대한 공청회, 자문 및 평가 2.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 활동 3.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4.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u>제5조(의장 등) (생략)</u> <u>제6조(상임운영위원회) ①~④ (생략)</u> ⑤ 상임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u>그린순천21지표사업 이행 및 평가</u> ⑥~⑦ (생략) ⑧ <u>그린순천21지표의 이행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7조 ~ 제19조 (생략)</u>	③ ----- ----- -----, <u>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u>제5조(기능)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u>----- -----. 1.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2.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평가 3.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4.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5.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7. 그 밖에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u>제6조(의장 등) (현행과 같음)</u> <u>제7조(상임운영위원회) ①~④ (현행과 같음)</u>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u>지속가능발전지표 계획 수립</u> ⑥~⑦ (현행과 같음) ⑧ <u>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한</u> ----- -----. <u>제8조 ~ 제20조(현행 제7조에서부터 제19조와 같음)</u>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 (안 제16조)
 -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20명 내외로 구성
 -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한 일반주민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임기는 매년 회계연도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선출
-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규정(안 제17조)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등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5. 관련부서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7. ~ 2. 27)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23.(여성가족과-71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6.(순천시 공고 제 2018-295호)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1조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8조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①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 위원회를 2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한 일반주민이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년 회계연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읍·면·동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읍·면·동 위원회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7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5.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에 따른 2018년에 위촉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 이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 시·읍·면·동 게 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예산학교 를 미수료한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 ----- ----- ----- ----- ----- 제18조--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 ① (생략)	제8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② ----- 제12조에 따른 ----- ----- 예산팀장-----.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14조 (생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 조까지와 같음)
<신설>	제16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①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 동별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 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5조 · 제16조 (생략) 〈신설〉	를 2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한 일반주민이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년 회계연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읍·면·동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읍·면·동 위원회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7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현행	개정안
<u>제17조</u> (생략) <u>제18조</u> (생략) <u>제19조</u> ~ <u>제21조</u> (생략) <u>제22조</u> ~ <u>제26조</u> (생략)	<u>논의 및 제안</u> 3. <u>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u> 4. <u>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u> 5. <u>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u> <u>제20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 <u>제12조</u> (현행 제18조와 같음) <u>제21조</u> ~ <u>제23조</u>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u>제24조</u> ~ <u>제28조</u> (현행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4호
----------	--------

○ 제출자 : 순천시청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도 입소 가능토록 범위 확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학부모 대표 2분의 1 이상) 명시
-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항 삭제

3. 개 정 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5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 2018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지침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제출자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7. ~ 2018. 2. 2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7.(여성가족과-522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6.(전략기획과-15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7.(순천시 공고 제2018-298호)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순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순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직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원칙으로 한다. 다만”을 “대상으로 하되”로 하고, “따르며”를 “따라 선정하며”로 하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추첨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보육 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장은 위원이”를 “위원이”로 하며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순천시 소속 공무원과 「순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및 「순천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순천시청에 재직 중이면서 순천시에 주소 둔 사람에 한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순천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 ----- ----- 3.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을 위하여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설치) ----- ----- ----- -----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의 비상 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생략) ② -----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 ① 보육대상자는 소속직원의 자녀로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 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직원 자녀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한다.	제8조(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 ① ----- ----- -----대상으로 하되, ----- ----- 따라 선정하며, -----공개추첨에 의한다. 1.~3. (생 략) 4. <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제4항(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③ (생 략) ④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어린이집의 원장</u> <u>보육교사 대표</u> <u>학부모 대표</u> <u>보육관련 전문가</u> <u>어린이집 관계 공무원</u> <u>그 밖의 보육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u>	제9조제4항(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보육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②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 1. ~ 4.(생 략)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이</u> ----- ----- -----<u>해촉</u>-----. 1. ~ 4. (현행과 같음)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에 순천시청 별관 주소가 구 별관으로 사용하던 순천문화원 건물 주소로 되어있어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순천시청 별관을 2013. 7. 1.부터 임대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소재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는 순천시 장명로 45(장천동)의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한다.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7. ~ 2018. 2. 27.)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6.(여성가족과-508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7.(전략기획과-155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7.(순천시 공고 제2018-304호)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순천시청 별관을 2013. 7. 1. 부터 임대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소재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는 순천시 장명로 45(장천동)의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신 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순천시청 별관을 2013. 7. 1. 부터 임대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소재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는 순천시 장명로 45(장천동)의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한다.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개정현황 : 조례 96건
- 개정내용
 - (기구명칭) “담당” 을 “팀” 으로 개정
 - (대외직명) “담당” 을 “팀장” 으로 개정

3. 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19. ~ 2018. 2. 26.)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19.(여성가족과-655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19.(전략기획과-197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19.(순천시 공고 제 2018-358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순천시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개정) 순천시 조례 중 담당 등 명칭의 개정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팀제 전환에 따른 조례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1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	실무담당으로	실무팀장으로	전략기획과
2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업무 담당이	업무팀장이	전략기획과
		제15조 제2항	주무담당이	주무팀장이	전략기획과
3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	업무 담당을	업무팀장을	전략기획과
4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	업무담당으로	업무팀장으로	전략기획과
		제14조 제2항	담당	팀장	
5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예산담당으로	예산팀장으로	전략기획과
		제18조 제5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제22조 제4항	예산담당으로	예산팀장으로	
6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예산담당	예산팀장	전략기획과
7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담당팀장	팀장	전략기획과
8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감사과
9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업무담당주사	업무팀장	총무과
10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	후생업무 담당	후생업무 팀장	총무과
11	순천시 포상 조례	제13조 제2항	포상업무담당주사가	포상업무 팀장이	총무과
12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제14조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재난관리업무 팀장	안전총괄과
13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	재난재해 업무 담당	재난재해업무 팀장	안전총괄과
		제9조 제6항	재난재해 업무담당으로	재난재해업무 팀장으로	
14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13조 제5항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안전총괄과
15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안전총괄과
		제8조 제3항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제21조 제1항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16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안전총괄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17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민방위담당	민방위팀장	안전총괄과
18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CCTV 업무 관련 담당이	CCTV 업무 관련 팀장이	안전총괄과
19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담당확인	팀장확인	세무과
		별지 제5호 서식	징수확인(담당)	징수확인(팀장)	
		별지 제6호 서식	징수확인(담당)	징수확인(팀장)	
20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팀장	세무과
		별지 제4호 서식	담당	팀장	
21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담당	팀장	세무과
		별지 제4~6호 서식 별지 제10~12호 서식			
22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팀장	회계과
2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10항	업무담당 주사로	업무팀장이	회계과
24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제9조	업무담당	업무팀장	홍보전산과
25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팀장	환경보호과
26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별지 제3호의 1서식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
		별지 제3호의 2서식	담당	팀장	
2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센터 업무팀장	자원순환과
28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제15조 (기금의 운용 관계 공무원)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팀장이 된다	자원순환과
		제23조(간사 등) 제2항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팀장이 된다	자원순환과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29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노사업무 담당	노사업무 팀장	경제진흥과
30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경제통상과장	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제5조 제1항 제2호	경제통상과 업무담당	경제진흥과 업무팀장	
31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취업지원 업무담당이	취업지원 업무팀장이	경제진흥과
32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업무담당	업무팀장	경제진흥과
33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8조 제5항	업무담당 주사가	업무팀장이	투자유치과
34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4조 제2항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마을공동체업무 팀장	시민소통과
35	순천시 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행복돌봄과
36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9조 제7항	담당주사	팀장으로	행복돌봄과
37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 례	제5조 제3항	각 업무담당과	각 업무팀장과	사회복지과
38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기금관리 자)	자활업무 담당으로	자활업무 팀장으로	사회복지과
39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업무담당주사로	업무팀장으로	사회복지과
40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10조 제5항	사회복지업무 담당	사회복지업무 팀장	사회복지과
41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업무담당이	업무팀장이	노인장애인과
42	순천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업무담당이	업무팀장이	노인장애인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43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	업무담당으로	업무팀장으로	노인장애인과
44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제5항	소관 업무 담당이	소관 업무 팀장이	노인장애인과
45	순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여성가족과
46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 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여성가족과
4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여성가족과
48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9조	업무담당주사가	업무팀장이	여성가족과
49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담당이	팀장이	토지정보과
		제17조 제3항	(담당)	(팀장)	
		별지 제5호 서식	담당	팀장	
50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9조	도로명주소업무담당	도로명주소업무팀장	토지정보과
51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지적재조사사업업무담당이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토지정보과
		제19조 제1항	지적재조사사업업무담당이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토지정보과
52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이	부동산가격공시업무 팀장이	토지정보과
53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2항	도시계획담당으로	도시계획팀장으로	도시과
54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	서기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업무팀장이	건설과
		별지 서식	담당	팀장	
55	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가	기반조성업무팀장이	건설과
56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	제5조 제5항	소하천업무 담당	소하천업무 팀장	건설과
57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 제22조	업무담당	업무팀장	건축과
58	순천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14조	업무담당	업무팀장	건축과
59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팀장	건축과
60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4조 제7항	주택관련 업무담당	주택관련 업무팀장	건축과
61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3항	자전거 업무 담당	자전거 업무 팀장	도로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62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팀장	교통과
63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8조	대중교통업무 담당	대중교통업무 팀장	교통과
64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의사담당이	의사팀장이	의회사무국
65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의출장 조례	제7조 제3항	의정담당으로	의정팀장으로	의회사무국
66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9조	업무담당주사로	업무팀장으로	의회사무국
67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	보건업무 담당주사가	소관 업무 주무팀장이	보건위생과
68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담당	소관 주무 팀장	보건위생과
69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 업무담당으로	관련 업무 팀장으로	보건위생과
70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소관업무 주무담당이	소관 업무 주무팀장이	보건위생과
71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	업무담당	업무팀장	농업정책과
7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	농정기획담당	농정기획팀장	농업정책과
		제16조 제6항	업무담당으로	업무팀장으로	농업정책과
73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	업무담당	업무팀장	농업정책과
74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업무담당으로	업무팀장으로	농업정책과
75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	업무담당	업무팀장	농업정책과
76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4조 제7항	담당	팀장	친환경농축산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77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담당이 된다	팀장이 된다	산림소득과
78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10조 제2항	귀농업무 담당	귀농업무 팀장	농촌지원과
79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직무육성품종 업무담당으로	직무육성품종 업무팀장으로	미래농업과
80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담당이	팀장이	상수도과
81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청소년업무담당	청소년업무 팀장	평생학습과
82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청소년업무 담당	청소년업무 팀장	평생학습과
83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2항	담당이	팀장이	문화예술과
		제20조 3항	담당이 되고	팀장이 되고	
84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문화업무담당이	소관업무 팀장이	문화예술과
85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1항	소관업무 담당이	소관업무 팀장이	문화예술과
86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	담당주사가	팀장이	문화예술과
87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6항	업무담당이	업무팀장이	문화예술과
88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 관 관리 운영 조례	제35조 2항	담당이	팀장이	문화예술과
89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체육진흥업무담당주사가	체육진흥업무 팀장이	스포츠산업과
90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27조 제2항	위원회 업무 담당이	위원회 업무 팀장이	국가정원운영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91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36조 제2항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간사는 순천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순천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순천만보전과
92	순천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제32조 제2항	간사는 문학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학관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순천시 공무원 중 문학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순천시 공무원 중 문학관 업무팀장이 된다.	순천만보전과
9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 제5항	업무담당주사로	업무팀장으로	공원녹지사업소
94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의6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무담당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무팀장	공원녹지사업소
9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26조 제7항	관리담당	관리팀장	낙안읍성
9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제8항	소관업무 담당	소관업무 팀장	문화예술회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대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
- 기존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표준조례안에 맞게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변경(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축소(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변경(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반영 (편성기준)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5. ~ 2018. 2. 2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6.(여성가족과-5081호) 개선사항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1.(전략기획과-12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5.(순천시 공고 제2018-274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

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6.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순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안전행정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소장. 다만, 해당 국장·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안전행정국장)
2. 통제관(해당 재난수습 주관 국·소장)
3. 관할소방서장. 단, 관할소방서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 및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라남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무반의 임무(제5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재난상황관리, 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 업무 지원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전 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해상 및 항공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해상·항공) 실태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 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학습과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전산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총괄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 지진 · 화산 · 낙뢰 ·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순천만보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스포츠산업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친환경농축산과 건설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경제진흥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위생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보호과 상수도과 환경보호과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진흥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교통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순천만보전과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진흥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경제진흥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소득과
19. 소방청	가. 화재사고 나. 위험물 사고	안전총괄과 환경보호과
20. 해양경찰청	가.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순천만보전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 무 내 용	담당 관	통제 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행정국장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6명+ α 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재난관리팀장)	
	1) 상황관리 총괄반(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재난안전상황실 1, 안전총괄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2)
	2) 협업기능반 (α 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복돌봄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회계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문화예 술과, 순천만보전과, 공원녹지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차)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 시민소통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순천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순천소방서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읍면동별 직원 1명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행정국장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13명+ $\alpha + \beta$ 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재난관리팀장)	
	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재난안전상황실 1, 안전총괄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2)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안전총괄과 1, 재난수습 주관부서 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안전총괄과 1, 재난수습 주관부서 2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1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복돌봄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회계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문화예술과, 순천만보전과, 공원녹지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시민소통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순천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순천소방서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순천교육지원청, 육군7391부대5대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KT순천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5) 부서별 직원의 4분의 1 이상, 읍면동별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4분의 1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행정국장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18명+ α 명+ β 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 상황관리 총괄반 (17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재난안전상황실 2, 안전총괄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2)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안전총괄과 1, 재난수습 주관부서 2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 안전총괄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5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1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복돌봄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회계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문화예술과, 순천만보전과, 공원녹지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시민소통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순천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순천소방서
	3)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순천교육지원청, 육군7391부대5대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KT순천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부서별 직원의 2분의 1 이상, 읍면동별 읍면동장 또는 팀장을 포함한 직원 2분의 1 이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안전행정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과·소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명+ α 명+ β 명+ γ 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 재난상황 총괄반(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3명)	· 안전총괄과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수습상황과악팀(6명)	· 안전총괄과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4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행복돌봄과, 사회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홍보전산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회계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문화예술과, 순천만보전과, 공원녹지사업소 및 그 밖의 재난수습 주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진흥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전산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차) 자원봉사자원 및 관리반	· 시민소통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순천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순천소방서
	3) 재난대응협업반(β)	· 순천교육지원청, 육군7391부대5대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KT순천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4)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 해당 지역 읍면동 직원	

비고(근무방법)

- (1) 실무반 근무인원은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재난상황총괄반·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 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 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 난	가. 풍수해 (호우·대설·태풍)	1) 비상 단계	가) 「기상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 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심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대설경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 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 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 1. 1.시행)됨에 따라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 기본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안 제3조 내지 제7조)
-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9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내지 제23조)
-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내지 제28조)
-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내지 제30조)
- 제도개선 과세 발굴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및 제32조)
-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내지 제39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공무원법 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31. ~ 2.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26.(여성가족과-35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29.(전략기획과-108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31.(순천시 공고 제2018-234호)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기한의 연장·가산세 감면·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영 제51조의2 및 제6조에 의한 업무(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無理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시장은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

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2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사항을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유공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공납세자에게 인증패 수여 가능하도록 보완 (안 제5조)
 - (현행) 인증서 → (개정) 인증서(패)
- 모범납세자 등에게 지원하는 상품권 종류 변경 (안 제6조)
 - (현행) 전통시장 상품권 → (개정) 순천사랑상품권
- 유공납세자 지원 사항 확대 (안 제6조 제2호)
 - (신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각종 행사 및 시찰 등 초청 예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조례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교통과 협의 완료(2018.3월, 관련 조례 개정 예정)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31. ~ 2.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12.(여성가족과-168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15.(전략기획과-57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31.(순천시 공고 제2018-222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증서”를 각각 “인증서(패)”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전통시장 상품권”을 각각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차량 1대에 한하여 순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라. 각종 행사 및 시찰 등 초청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표창 및 인증) 시장은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u>인증서</u> 또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u>인증서</u>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표창 및 인증) ----- ----- ----- <u>인증서(패)</u> ----- ----- ----- .----- <u>인증서(패)</u> -----.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 ----- ----- . ----- ----- -----.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2만원 이내 의 <u>전통시장 상품권</u> 또는 교통 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1. ----- ----- ----- <u>순천사랑상품권</u> ----- -----.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2. ----- ----- ----- -----.
가. 3만원 이내의 <u>전통시장 상품권</u> 또는 교통카드	가. ----- <u>순천사랑 상품권</u>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신설>	다. 차량 1대에 한하여 순천시 <u>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 년간 면제</u>
<신설>	라. 각종 행사 및 시찰 등 초청 <u>예우</u>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7.12.26.공포 2018.1.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확대 (안 제6조)
 - 감면을 및 감면기간 확대
 - (현행) 7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 → (개정) 15년간 전액 감면
 - (현행) 사업양수의 경우 7년간 5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30% 감면
→ (개정) 10년간 50%
 -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 감면 대상 포함
 - 사업개시일 전 취득 재산 감면 포함
- 전자고지 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 공제 확대 (안 제8조)
 - (현행) 통장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만 세액 공제
→(개정) 전자고지 및 신용카드자동이체의 경우도 각각 150원 세액 공제
- 시행일 :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18.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등록면허제도 전자고지 세액공제 확대 대상이므로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하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31. ~ 2.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26.(여성가족과-35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29.(전략기획과-108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31.(순천시 공고 제2018-227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제8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5년”을“7년”으로 하고,“2년”을“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3년”을“7년”으로 하고,“2년”을“3년”으로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현행	개정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현행	개정안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과 같다. 1. <u>자동계좌이체</u>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u>자동계좌이체</u> 방식과 <u>전자송달 방식</u>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u>전자송달</u>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u>자동이체</u> ----- ----- 2. <u>전자송달</u> 방식과 <u>자동이체</u> 방식 ----- -----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7.12.26.공포 2018.1.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으로 변경 (안 제10조)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 3 →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 4
- 주택분 재산세 중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금액 상향 조정(안 제15조)
 - (현행) 10만원 → (개정) 20만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31. ~ 2.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26.(여성가족과-35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29.(전략기획과-108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31.(순천시 공고 제2018-232호)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제15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영 제85조의3</u>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 ----- ----- ----- ----- <u>영 제85조의4</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 ----- ----- <u>20만원</u> ----- ----- ----- -----.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제정이유

- 업사이클링·재활용 문화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의 거점인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목적, 용어정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센터의 운영, 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사용기간, 입주자 지원 및 의무사항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 센터의 위탁운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의무부과, 지도·감독 등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9조)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6조)

3. 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5. ~ 2. 2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4.(여성가족과-104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7. 12. 26.(자원순환과-3495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31.(전략기획과-123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5.(순천시 공고 제2018-262호)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란 업사이클링·재사용·재활용(이하 “업사이클링등” 이라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업사이클링등의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업사이클링” 이란 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 활용성 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수탁자” 란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입주자” 란 시장으로부터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입주한 기관등을 말한다.
7. “사용자” 란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등을 말한다.
8. “사용료” 란 수탁자, 입주자, 사용자가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의 본관은 순천시 팔마1길 9-19(연향동)에, 생산동은 순천시 해촌길 35(왕지동)에 각각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사이클링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3. 업사이클링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시, 체험, 교육, 홍보
4. 재활용센터로서 중고물품의 기증, 교환, 수리, 판매 등
5. 그 밖에 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사이클링등 산업 관련 기관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전시·판매하는 공간
3.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의 소재 조달·가공 및 자재 저장 공간
4. 체험·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공간
5. 기타 다목적실, 판매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2장 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제6조(관리·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사이클링등 관련 기관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사이클링등 관련 제품·작품의 전시 및 체험·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업사이클링등 산업 관련 기관등
2. 업사이클링등 산업의 육성·발전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한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순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업사이클링등 관련 행사

3. 폐자재를 활용하여 지역생산제품인 업사이클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기간) ① 입주자의 센터 시설 사용·수익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할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11조(입주자등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 중 업사이클링등 관련 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 유지·보호, 화재 예방, 도난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복구 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조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

제1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범위, 관리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으려 할 경우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보호,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위·수탁 조건 및 시설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결과 등의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사 또는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운영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업사이클링등 산업육성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은 업사이클링등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1명
 - 2. 센터의 수탁자 및 입주자
 - 3. 그 밖에 업사이클링등 관련 산업, 디자인, 환경, 경영, 회계, 법률, 문화, 관광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자
- ⑤ 당연직 위원은 업사이클링등 업무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사이클링등 업무소관 팀장, 서기는 센터 담당자가 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 요인 :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비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6조(운영), 제15조(위탁운영 지원)
 - 제6조제1항 :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사이클링등 관련 기관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함
- 센터의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추계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1,202,025	-215,005	-274,105	-267,905	-234,005	-211,005
세입(a)	255,800	5,200	31,400	47,600	76,800	94,800
세출(b)	1,457,825	220,205	305,505	315,505	310,805	305,80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1,457,825	220,205	305,505	315,505	310,805	305,805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457,825	220,205	305,505	315,505	310,805	305,805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업사이클링 제품 가공·생산·판매, 소재은행, 상점운영, 전시·체험, 교육·홍보 등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18년 ~
- 산출액 : (2018년) 220,000천원 (2019년) 305,000천원
- 산출근거 - 세부내역 별첨

【2018년】

- ▶ 인건비 : 61,190천원 *센터장 외 5명 6개월 소요액
- ▶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 12,705천원
- ▶ 전시홍보비(개관전시회, 공모전 등) : 82,000천원×1식
- ▶ 사업비(판매점, 소재은행, 창업지원 등) : 64,105천원×1식

【2019년】

- ▶ 인건비 : 134,970천원 *센터장 외 5명 연간 소요액
- ▶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 34,475천원
- ▶ 전시홍보비(전시회 등) : 42,000천원×1식
- ▶ 사업비(판매점, 소재은행, 창업지원 등) : 93,555천원×1식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안전행정국 자원순환과 과장 김지식(☎ 749-6207)
재활용팀장 윤영한(☎ 749-6411)

별첨

□ 비용추계의 세부 산출내역

○ 세입

(단위 : 천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2년	합계
입주업체 임대 수입	4,000	12,000	12,000	12,000	12,000	52,000
전시·판매장 수익		2,000	5,000	12,000	20,000	39,000
전문교육 수입		5,000	7,000	8,000	8,000	28,000
체험·교육프로그램	1,200	2,400	3,600	4,800	4,800	16,800
소재중개 및 판매		10,000	20,000	40,000	50,000	120,000
계	5,200	31,400	47,600	76,800	94,800	255,800

○ 세출

(단위 : 천원)

구분		준비단계	초기단계		성장단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건비		61,190	134,970	134,970	134,970	134,970	601,070
운영(관리)비		12,705	34,475	34,475	34,475	34,475	150,605
사업비	소재은행	20,000	10,000	20,000	40,000	50,000	140,000
	업사이클창업지원	27,390	36,780	36,780	30,000	15,000	145,950
	상점운영	10,800	43,200	43,200	43,200	43,200	183,600
	체험·교육	6,120	4,080	4,080	8,160	8,160	30,600
	전시·홍보	82,000	42,000	42,000	20,000	20,000	206,000
계		220,205	305,505	315,505	310,805	305,805	1,457,825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제정이유

-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증진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 기본원칙,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안 제5조~제6조)
- 행복지표에 따른 행복지수의 측정, 공표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행복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3. 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7. ~ 2018. 2. 2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8.(여성가족과-104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29.(전략기획과-108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7.(순천시 공고 제2018-300호)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시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복지·교육 등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행복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
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
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4. 시민과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 행복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행복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및 방향
 3.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른 상대적 개념의 “행복기준선”의 반영을 위하여 정책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행복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 산하 소속 공무원 및 우리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촉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정책 전파 등을 위한 행복리더 육성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행복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제법” 일괄 준용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안 제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마련(안 제2조)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제법” 일괄 준용(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15. ~ 2.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5.(여성가족과-67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2. 29.(전략기획과-1768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15.(순천시 공고 제2018-84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날로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0	200	300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제정이유

- 순천시를 웹툰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과 웹툰 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능(안 제4조)
- 조직 및 운영(안 제5조 ~ 안 제6조)
-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웹툰 강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준용(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별도첨부

4. 관련법령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5. ~ 2. 2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26.(여성가족과-35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1. 31.(전략기획과-125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31.(전략기획과-125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1.(순천시 공고 제2018-268호)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화”란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대화를 삽입하여 그린 그림을 말한다.
2. “웹툰”이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서 각종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와 웹툰을 매개로 하여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만화·웹툰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시민로 29 (장천동)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
2. 만화·웹툰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만화·웹툰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만화·웹툰의 자료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
5. 만화·웹툰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6. 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만화·웹툰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되, 팀별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순천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4.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나 웹툰작가 대상으로 만화·웹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시간표

(제7조 관련)

사용구분	1회 기준	사용시간
다목적홀 교육실1 교육실2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야간	18:00 ~ 21:00
	1일	09:00 ~ 18:00

[별표 2]

글로벌웹툰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

(제8조제1항 관련)

○ 시 설

(단위: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규 모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 고
다목적실	296.15㎡	1일	80,000	30,000	○1일 : 09:00~18:00 ○1회 : 오전, 오후 - 오전 : 09:00~13:00 - 오후 : 14:00~18:00 - 야간 : 18:00~21:00 ○냉난방기 - 동·하절기 의무사용 - 기타기간 사용시만 적용
		1회	32,000	12,000	
교육실 1	40.0㎡	1일	30,000	20,000	
		1회	12,000	8,000	
교육실 2	58.5㎡	1일	30,000	20,000	
		1회	12,000	8,000	

※ 행사준비를 위해 시설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감산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조례안 1조(목적)

-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조례안 제4조(기능)

- 만화·웹툰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 만화·웹툰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만화·웹툰의 자료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
- 만화·웹툰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 조례안 제6조(운영)

- 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경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글로벌웹툰센터 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이 수반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 3,200,000	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세입(a)	1,250,000	4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세출(b)	4,450,000	45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5,700,000	9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국 비	1,250,000	4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도 비						
시 비	4,450,000	45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경제관광국 경제진흥과

과장

이재성 (☎ 749-5487)

일자리창출담당 허범행 (☎ 749-5748)

[붙임]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목	세목	사업비 산출내용	사업비 편성 내용	
			예산액	이유
합 계			1,200,000	
인건비	소 계		154,059	
	보수	• 대표(1):2,000천원×1명×12개월=24,000천원	24,000	천연물 대표 : 1,000천원
		• 사무국장(1):기본급42,560,760(16,970*1*209시간*12) + 보험료4,309,000 = 46,869,760	46,870	천연물 사무국장 : 5,000천원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7단계)
		• 직원(4):기본급75,540,960(7,530*4*209*12)+보험료7,648,039 = 83,188,999	83,189	최저시급 적용
운영비	소 계		131,000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 회의준비 물품준비 30,000천원×1식=30,000천원 • 소모성물품구입 10,000천원×1식=10,000천원 • 안내팜플릿, 현수막제작 6,000천원×1식=6,000천원 • 홍보물품 제작 5,000천원×1식=5,000천원	51,000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80,000천원	80,000	
여비	소 계		5,400	
	국내여비	• 출장여비 60,000원×6명×15회=5,400천원	5,400	
업무추진비	소 계		4,000	
	사업추진비	• 4,000천원×1식=4,000천원	4,000	
민간이전	소계		905,541	
	민간경상보조	• 정원생태웹툰공모전 : 대상5,000천원+최우수상3,000천원 +우수상2,000천원*10,000천원	10,000	대구웹툰창작지원센터 웹툰공모전: 총30,000천원(대상10,000천원, 최우수상5,000*2우수상3,000*2장려상1,000*4)
		• 창작작지원사업공모:5*30,000천원=150,000천원	150,000	기획창작웹툰제작지원사업(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6개과제*과제별5천만원

목	세목	사업비 산출내용	사업비 편성 내용	
			예산액	이유
민간 위탁 사업 비		• 폰트개발:30,000천원×1식=30,000천원	30,000	디지털폰트 한벌체, 한빛체 디자인 연구개발:56,800,000원(4개월)
		• 3D모델링공모:30,000천원×1회=30,000천원	30,000	공원녹지3D정보모델링용역(서울주택 도시공사):9개월*33,000,000
		• 웹툰작가특강 5,000천원	5,000	
		• 웹툰사이트개발50,000천원	50,000	17년 교육기부 매칭사이트 개발 운영 용역(한국과학창의재단):50,000천원
		• 제작지원우수캐릭터개발 : 2*25,000천원=50,000천원	50,000	기획창작웹툰제작지원사업(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2개과제*과제별4 천만원
		• 웹툰페스티벌 - 특별교육과정(시민참여) 일반강사1급490,000원×1회×3명=1,470천원 - 간행물제작(특별교육과정교재):530천원 - 만화웹툰존 10,000천원×1회=10,000천원 - 웹툰포럼 15,000천원×1회=15,000천원 - 전시회(1) 5,000천원×1회=5,000천원 - 행사 안내 팸플릿,현수막 제작 3,000천원×1식=3,000천원	35,000	2017 평창동계올림픽 창작 웹툰 공모전 전시 용역(한국만화영상진흥원): 44,000천원 만화웹툰존:캐리커처,코스프레,그 리기체험,페이스페인팅,가면만들기, 맹꽂이서당 등
		• 교육프로그램운영 - 간행물제작(수업교재) 10개 과정×1,000천원=10,000천원 - 작가입문과정 일반강사2급370,000원×48회×2명=35,520천원 - 특별교육과정(저작권) 일반강사1급490,000원×4회×1명=1,960천원 - 작가양성과정 일반강사1급490,000원×96회×2명=94,080천원	141,560	
		• 제작전문가관리(어시스트) 13,000천원×1식=13,000천원	13,000	풀(pool)관리 / 50%지원
		• 굿즈샵운영물품 20,981천원	20,981	
		• 테마거리 370,000천원	370,000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및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안 제3조)
-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 등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5조)

3. 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5. 관련부서 의견 : 생활임금 조례 적용범위 검토 의견서 첨부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5 ~ 2018. 2. 25) 결과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필 : 2018. 1. 26.(여성가족과-35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5. 3. 5.(경제진흥과-8650)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22.(전략기획과-82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5.(순천시 공고 제2018-269호)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10조(적용시기)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3조

-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연·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 (a-b)	-7,573,000	-1,429,000	-1,530,000	-1,538,000	-1,538,000	-1,538,000
세입(a)						
세출(b)	7,573,000	1,429,000	1,530,000	1,538,000	1,538,000	1,53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7,573,000	1,429,000	1,530,000	1,538,000	1,538,000	1,538,000
국비						
도비						
시비	7,573,000	1,429,000	1,530,000	1,538,000	1,538,000	1,538,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 상 자 : 791여명
- 사업기간 : 2018년~
- 산 출 액(2018년) : 1,429,000천원
- 산출근거(2018년)
 - 생활임금 지급 : 753원×8시간×25일×791명×12월 = 1,429,000천원
 - ※ 2018년 정부 최저임금 지급 : 7,530원 (17년 6,470원)

[참고자료 1]

생활임금 조례 적용 범위 검토 의견서

1. 생활임금 조례 적용범위 (지자체별 유형-조례상)

- 소속 근로자 : 서울 서초구 등 16개 (광역시 3, 시군구 13)
- 소속 근로자 + 출연기관 : 충청남도 등 31개(광역시 2, 시군구 29)
- 소속 근로자+출연기관+민간위탁 : 여수 등 5개 (시군구 5)
- 소속 근로자+출연기관+민간위탁+자치단체 공사,용역
- 전라남도 등 27개 (광역시 5, 시군구 22)

2. 검토 결과(장·단점 분석)

구분		장점	단점	비고
1안)	소속 근로자	• 추가 소요예산 최소화	• 시행 효과(대상자) 미흡 • 미미한 시행효과로 일부 시민(노동) 단체의 반대 우려 있음 (ex) 포천군)	
2안)	소속 근로자 + 출연기관			
3안)	소속 근로자 +출연기관+민간위탁	• 시행효과(대상자) 확대	• 추가 소요예산 과다 • 위탁업체에서 불이행시 민원 발생 소지 •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와의 임금격차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 ※ex)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종사자	
4안)	소속 근로자+출연기관+민간위탁+자치단체 공사,용역	• 시행효과(대상자) 확대 • 민간영역까지 파급 효과가 큼	• 추가 소요예산 과다 •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와의 임금격차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 • 행정력 추가 투입요인 발생 • 민간기업의 이익을 제한 할 수 있음 •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없음	

3. 주무과 의견

- 현재는 많은 지자체가 예산과 시행의 용이함을 이유로 1안과 2안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 인근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이미 3안 (소속 근로자 +출연기관+민간위탁) 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적용범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4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제 6조(계약의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다음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최저임금 결정 이후)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실행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시기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자료 2]

생활임금 조례 적용범위 지자체별 유형 (조례상)

①소속 근로자 : 16개

-서울 서초구, 서울 종로구, 부산 동래구,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대전 서구, 대전유성구, 군산시, 울진군, 논산시,평택시,동두천시,용인시,
포천시, 장수군

②소속근로자+출연기관 : 31개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서울 동작구, 서울 용산구,서울 노원구,서울 관악구,
서울 성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남
구,인천 계양구, 경기 광주시, 가평군,고양시,과천시,남양주시,
구리시,평택시,성남시, 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성시,안양시,양평군,여주군,
연천군,의정부시,세종시

③소속근로자+출연기관+민간위탁 : 5개

- 부산 중구, 여주시, 익산시, 광명시, 화성시

④ 소속근로자+출연기관+민간위탁+자치단체 공사,용역 : 27개

- 전라남도, 서울시, 광주 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서울 성북구,서울 구로구,목포
시, 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
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인천 부평구,인천 남동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아산시,안산시,수원시,하남시,군포시,이천시

[참고자료 3]

생활임금 조례 적용범위 지자체별 유형 (실제)

①소속 근로자 : 18개

-서울 서초구, 서울 종로구, 서울 송파구, 부산 동래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대전 서구, 대전유성구, 군산시, 울진군, 논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용인시, 포천시, 장수군

②소속근로자+출자 출연기관 : 49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서울 동작구, 서울 용산구, 서울 노원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성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강동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북구, 부산 중구, 인천 남구, 인천 계양구, 경기 광주시,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평택시, 성남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이천시, 세종시, 목포시, 익산시, 광명시, 광주 남구, 광주동구, 광주서구, 광주광산구

③소속근로자+출연기관+민간위탁 : 12개

-전라남도, 서울시, 광주 광역시, 서울 구로구, 인천 남동구, 인천부평구, 여주시, 화성시, 군포시, 아산시, 안산시, 수원시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제정이유

- 4차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순천시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의 사업 범위와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총칙(안 제1장)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주민의 참여 등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선정·지원(안 제2장)
 - 종합계획의 수립,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선정, 선정사업에 대한 지원
- 4차산업혁명위원회(안 제3장)
 -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 사업수행조직(안 제4장)
 - 전담조직의 설치 및 기능, 재단법인 설립·운영,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시행(안 제5장)
 - 사업의 추진, 사업의 범위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불입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7. ~ 2018. 2. 2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6.(여성가족과-5081)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1. 31.(전략기획과-1250)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31.(전략기획과-1250)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7.(순천시 공고 제2018-289호)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순천시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의 사업 범위와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란 교육·일자리·미래성장동력·민관협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잡월드와 에코에듀센터 등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비지원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선정·지원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4차산업혁명 환경 변화
2. 4차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3. 4차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혁명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6. 순천만잡월드 운영 종합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산업을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4.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활용, 국도비 지원 및 민간투자 사업

제7조(선정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기관·단체·기업 등의 부담분을 제외한 사업비의 지원
2.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8조(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일반 주민
3. 순천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혁명 정책 개발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혁명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업수행조직

제12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재단법인 설립·운영) ①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기구 구성 및 업무범위·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연관 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과 협의한다.

제5장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시행

제1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을 재단법인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범위) 제16조에서 시장에게 위임받은 재단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부지(기반) 조성 및 사업 추진
3.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조직운영 및 재원조달·집행
4.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주행사 및 부대행사 추진
5.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홍보 추진
6.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7.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연관사업 조성
8.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 관련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협조
9. 순천만잡월드의 운영
10. 그 밖에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18조(준용) 재단법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 제2항

-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비지원사업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7조 제1항

-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3조 제1항

- 시장은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초기(2018년부터 4년간)에는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기반사업 시행으로 인해 세출이 세입보다 많으나 4차년 이후 민간자립도가 점차 높아져 세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접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소요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까지)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 34,950	△ 23,050	△ 4,900	△ 4,500	△ 2,500
세입(a)	58,600	25,600	11,000	13,000	9,000
세출(b)	93,550	48,650	15,900	17,500	1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까지)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합 계	93,550	48,650	15,900	17,500	11,500
국 비	34,000	16,000	6,000	8,000	4,000
도 비	24,600	9,600	5,000	5,000	5,000
시 비	34,950	23,050	4,900	4,500	2,5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입 : 국도비 58,600백만원(잡월드 33,600, 박람회 25,000)
- 세출

구 분	금액(백만원)	산출기초	비 고
순천만잡월드 건립 및 운영	48,500	잡월드 건립 및 운영 48,500,000,000회×1식	1~3차년도
4차산업혁명박람회 개최	45,000	박람회 개최 45,000,000,000원×1식	1~4차년도
재단법인 출연금	50	출연금 50,000,000원×1회	1차년도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749-4403)
잡월드기획팀장 최홍미 (749-4411)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참여·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시스템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한 조항 개정(안 제11조)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 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범위를 “사무위탁기간”으로 개정함(안 제13조 제2항)
- 소관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철저를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8조 제4항, 안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8. ~ 2. 2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7.(여성가족과-522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1.(전략기획과-12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8.(순천시 공고 제2018-320호)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집·빈점포·빈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도시재생업무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센터의 전문성·지속성·안정성·현장성 등을 위해 민법 제 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센터를 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재단법인 등으로 위탁운영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영 제14조 제2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4. 지역주민 리더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센터의 업무) ----- -----.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집·빈점포·빈상가의 실태,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현행	개정안
제1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8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①~③ (생략) (신설)	제13조(센터의 운영) ① ----- --. 다만, 도시재생업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센터의 전문성·지속성·안정성·현장성 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u>사무위탁기간은</u> -----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를 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재단법인 등으로 위탁운영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생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4조 규정에 의해 순천시 시티투어 운영함에 있어 매년 가중되는 손실보전금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산절감,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이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용료(제 4조 제3항 관련)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요금	5,000	3,000	2,000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22. ~ 2. 1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5.(여성가족과-6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15.(전략기획과-57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6. 1. 22.(순천시 공고 제2018-146호)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의 별표3 중 시티투어 이용료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이 용 료(제4조제3항 관련)

☐ 시티투어(차량이용)

(단위 : 원)

구분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고
요금	5,000	3,000	2,0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3〕 이용료(제4조제3항 관련) ☐ 시티투어(차량이용)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어른</th><th>청소년 및 군인</th><th>어린이</th><th>비고</th></tr><tr><td>시내권</td><td>3,000</td><td>2,000</td><td>1,000</td><td></td></tr><tr><td>시외권</td><td>5,000</td><td>4,000</td><td>2,000</td><td>선암사,송광사 방면</td></tr></table>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시내권	3,000	2,000	1,000		시외권	5,000	4,000	2,000	선암사,송광사 방면	〔별표3〕 이용료(제4조제3항 관련) ☐ 시티투어(차량이용)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어른</th><th>청소년 및 군인</th><th>어린이</th><th>비고</th></tr><tr><td>요금</td><td>5,000</td><td>3,000</td><td>2,000</td><td></td></tr></table>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요금	5,000	3,000	2,000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시내권	3,000	2,000	1,000																							
시외권	5,000	4,000	2,000	선암사,송광사 방면																						
구분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비고																						
요금	5,000	3,000	2,000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예산 지원 조항 신설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제24조(예산지원 등)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업 비용 지원할 수 있음
 - 1. 마을공동체 사업 2. 역량강화 경비 3. 사기진작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3. 개정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31. ~ 2018. 2. 2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12.(여성가족과-168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23.(전략기획과-87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30.(순천시 공고 제2018-246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2.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경비
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4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u> <u>2.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경비</u> <u>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24조 (생략)</u>	<u>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u>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조례안 24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2.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경비
3.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 예산 수반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1,385,000	-257,000	-267,000	-277,000	-287,000	-297,000
세입(a)						
세출(b)	1,385,000	257,000	267,000	277,000	287,000	297,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1,385,000	257,000	267,000	277,000	287,000	297,000
국 비	-	-	-	-	-	-
도 비						
시 비	1,385,000	257,000	267,000	277,000	287,000	297,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3개 단위사업 (마을공동체사업,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경비,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사업기간 : 2018년 ~
- 산출액 (2018년) : 257,000천원
- 산출근거
 - 마을공동체사업 : 18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 5,000천원 × 12읍면동 = 60,000천원
 - 민간자본보조 : 10,000천원 × 12읍면동 = 120,000천원
 -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경비 : 57,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주민자치박람회, 워크숍, 선진지 견학) : 51,000천원,
 - 사무관리비(주민자치교육 등) : 3,000천원 × 2회 = 6,000천원
 - 체육행사등에 필요한 경비(민간경상보조)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2018년 예산 책정되어 있으며 지원근거를 확실시하고자 함

8. 작성자

- 경제관광국 시민소통과 과장 임영모 (☎ 749-5453)
- 마을공동체팀장 김미자 (☎ 749-5603)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3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표준개정안)”에 의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9조(위원의 선정) :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 범위 추가(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 제10조(선정위원회) : 위원 구성에 있어 범위 추가(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추천 위원) 및 추천인원 조정
- 제12조(간사) : 실비 ⇒ 실비 및 수당 지급
- 제15조(운영) : 주민자치회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 문서회람, 공고 통해 주민의견 수렴(신설)
- 제21조(지원및시책수립) : 해당 동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전용 사무실 제공할 수 있음(신설)
- 제2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위원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 ⇒ 시장에게 요구

3. 개정안 : 별 첨

4. 관련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 설치), 제28조(주민자치회 기능), 제29조(주민자치회 구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31. ~ 2018. 2. 20.)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12.(여성가족과-168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29.(전략기획과-108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30.(순천시 공고 제2018-247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단체 등의” 를 “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의”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3명” 을 “2명” 으로, 3호중 “3명” 을 “2명” 으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동 주민공동조직 추천위원 2명 이내

제12조제3항 중 “실비를” 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자치회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생략) 1~2 (생략) 3. 직능대표위원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u>단체</u>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위원회에 서 선정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② ~ ⑦ (생략)	제9조(위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u>주민공동조직</u> 등의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유관기관(단체) 추천인원 <u>3명</u> 이내 3.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 <u>3</u> 명 이내 <u><신 설></u> ③ ~ ⑥ (생략)	제10조(선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2명</u> 이내 3.----- <u>2</u> ----- 4. <u>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u> <u>동 주민공동조직</u> 추천위원 <u>2명</u> 이내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① ~ ② (생략)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 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을 감안하여 <u>실비</u>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u> -----.
제15조(운영) ①~③ (생략) <u><신 설></u>	제15조(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u> <u>대해서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u> <u>의견을 들을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2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① (생략)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u>자치회장</u>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시장</u>----- ----- -----.
제21조(지원 및 시책 수립) ①~③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21조(지원 및 시책 수립)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u> <u>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u>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7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두 번이상 갱신하려면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한편, 마치 아무런 평가 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 제14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자 함.

※ 자치법규 정비과제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58(2017.1.6.)

2. 주요내용

-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②항 개정
-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2. 20. ~ 2018. 1. 9.)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2. 14. (여성가족과-4258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2. 8. (전략기획과-1680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2. 21. (순천시 공고 제2017-1859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생 략)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 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 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 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삭 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제시한 의견에 맞게 보완·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 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 제12조 제1호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자”로 수정
- 평생학습관의 설비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 해당조항 제19조를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8. ~ 2. 2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5.(여성가족과-349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1. 2.(전략기획과-1502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8.(순천시 공고 제2018-315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시설의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입장제한) ----- ----- -----.
1. 전염성 질환자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변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평생학습관의 설비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생략)	제19조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관련(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사항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관련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위탁운영 관련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원 수탁 대상 단체 명확화 : 청소년단체로 한정
- 자치법규 정비 결과 위임범위 일탈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 시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함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 받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퇴소 조치함
- 수련원 이용자의 사용료 반환 근거 마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 위원회에 성별이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수탁자 선정 절차 및 위탁기간 명확화
 - 수탁자선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회파·제척 규정 마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3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15. ~ 2. 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5.(여성가족과-67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2. 28.(전략기획과-1760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15.(순천시 공고 제2018-20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체 등” 을 “청소년단체” 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을 준용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로 한다.

제25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관련 분야 전문가
3.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3(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은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u>단체</u>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 ----- ----- ----- ----- ----- <u>청소년단체</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손해배상) ① <u>시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u>	제12조(손해배상) ① <삭 제>
② (생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사용자가 <u>제2항의</u>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u>제1항</u> ----- ----- ----- ----- -----.
④ (생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u>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u>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

현행	개정안
<u>한 경우</u> <u>2.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u> <u>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u> <u>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u> <u>등이 취소할 경우</u> <u><신 설></u> <u>제16조(과태료 징수 등) ① 허위 등</u> <u>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라</u> <u>사용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u> <u>는 면제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u> <u>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발견</u> <u>즉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하</u> <u>야 한다.</u> <u>1.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인솔자 또</u> <u>는 대표자에게 부과한다.</u> <u>2.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때에</u> <u>는 즉시 강제 퇴소 시킬 수 있다.</u> <u>제17조 · 제18조 (생 략)</u> <u>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u> <u>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u> <u>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u> <u>한다.</u>	<u>한 경우</u> <u>2.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u> <u>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u> <u>3.<삭 제></u> <u>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u> <u>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u> <u>기준」을 준용한다.</u> <u><삭 제></u> <u>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7조 및 제</u> <u>18조와 같음)</u> <u>제18조(위원회 구성) ① -----</u> <u>-----</u> <u>----- 구성하되, 특</u> <u>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u> <u>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u>

현행	개정안
② ~ ③ (생략) <u>제20조 ~ 제24조</u> (생략) <u>제25조</u> (생략) <u><신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9조 ~ 제23조</u> (현행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u>제24조</u> (현행 제25조와 같음) <u>제25조(위탁운영)</u> ① 시장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u>제25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등)</u>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u><신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u>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평생학습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u> <u>1. 순천시의회 의원 2명</u> <u>2. 청소년관련 분야 전문가</u> <u>3.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u>4.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u> ④ <u>심의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u> ⑤ <u>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u> ⑥ <u>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제25조의3(심의위원의 제척 등) ①</u> <u>심의위원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u> <u>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u>

현행	개정안
<u>제2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법을 정하여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u> <u>③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u>	<u>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제27조 ~ 제31조 (생략)</u>	<u>제26조 ~ 제30조 (현행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u>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5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보완 ·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법제14조 제3항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 위촉하도록 규정 되어있는데, 시의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위촉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촉 취지에 맞지 않음
 - 제7조 제3항 중 “순천시의회 의원, 학계” 를 “학계” 로 수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제14조 제3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8. ~ 2. 2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5.(여성가족과-349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1. 2.(전략기획과-1502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8.(순천시 공고 제2018-314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순천시의회 의원, 학계”를 “학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계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순천시의회 의원,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 <u>학계</u> ----- -----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51호
----------	--------

- 제출자 : 순천시청
- 제출일시 : 2018. 3. 9.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안 제1조)
- 설치종목 및 구성, 임용, 계약해지 등(안 제2조 ~ 안 제9조)
- 보수 지급, 상벌에 관한 근거(안 제10조 ~ 안 제11조)
- 인사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시행규칙 제정(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7. ~ 2. 2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18. 2. 7.(여성가족과-522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2. 5.(스포츠산업과-93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8.(전략기획과-156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7.(순천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공고 제2018-2호)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경기부의 종목은 정구, 양궁, 유도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부의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직장운동경기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경기부의 단원은 총감독,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단장은 순천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무는 단원 운영을 위한 행정·행정적 실무를 담당한다.

④ 총감독은 경기부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⑤ 감독은 훈련 및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선수를 발굴·육성한다.

⑥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③ 선수는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연봉제 선수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입단계약의 서류 및 서식,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조~~집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4.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팀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6.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수당, 훈련비, 입단계약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제11조(상벌) ①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원의 자격 및 입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단한 지도자 및 선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추고 계약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수당, 훈련비, 입단계약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 안 제11조(상별) 제1항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단원 보수, 수당, 훈련비, 입단계약금, 퇴직금 및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등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세 출	10,402	2,002	2,100	2,100	2,100	2,1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시 비	10,402	2,002	2,100	2,100	2,100	2,1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보수 및 각종 수당(평균) : 1,060,651천원
 - 58,925,050원×18명 = 1,060,651천원
- 각종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 203,000천원
 - 정구부 : 91,200천원
 - 양궁부 : 33,200천원
 - 유도부 : 78,600천원

- 훈련복 및 훈련장비 구입비 : 190,500천원
 - 정구부 : 102,500천원
 - 양궁부 : 58,000천원
 - 유도부 : 30,000천원
- 입단계약금 : 250,000천원
 - $50,000 \times 5\text{명} = 250,000\text{천원}$
- 퇴직금 : 40,000천원
 - 정구부 : $10,000 \times 2\text{명} = 20,000\text{천원}$
 - 양궁부 : $10,000 \times 2\text{명} = 20,000\text{천원}$
- 포상금(국제대회 포함) : 103,000천원
 - 정구부 : 42,000천원
 - 양궁부 : 17,000천원
 - 유도부 : 44,000천원
- 그 외 숙소 관리비 및 5대보험 부담금 등 : 155,136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

평생학습문화센터 스포츠산업과 과장 (☎ 749-6650)
 체육지원팀장 (☎ 749-6803)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폐지이유

- 행정자치부 + 법제처 협업과제에 의한 법령 정비대상
- 조례 제정 근거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2000. 7. 1.)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
-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징수 환지청산금(4백만원)은 일반회계로 귀속

3. 폐지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 제출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8. 1. 11. ~ 1. 31.)
- 의견제출 :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2. (전략기획과-1367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11. (순천시공고 제2018-62호)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폐지이유

- 행정자치부 + 법제처 협업과제에 의한 법령 정비대상
- 조례 제정 근거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2000. 7. 1.)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
-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징수 환지청산금(6백만원)은 일반회계로 귀속

3. 폐지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 제출의견 없음

- 관련부서 제출의견 : 의견 없음
- 주민제출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8. 1. 11. ~ 1. 31.)
- 의견제출 :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2. (전략기획과-1367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11. (순천시공고 제2018-63호)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호(허가 및 신고의 수리기준)의 별표1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 표시기간 (3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
-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생활형 간판에 대하여 연장 신고제 폐지, 다만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8. ~ 2. 28.)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18. 2. 7.(여성가족과-522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6.(전략기획과-153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8.(순천시 공고 제2018-17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각 호를 삭제하고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를 “영 제3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 ----- ----- 영 제3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폐지이유

-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협업과제에 의한 정비과제로 확정
-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운영의 상위법(지방재정법 제11조)에 위반 소지

2. 주요내용

-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

5.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 제출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8. 2. 5. ~ 2. 25.) : 의견제출 :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5. (전략기획과-142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5. (순천시 공고 제2018-290호)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45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도심지역에 부설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개선(안 제3조)

- 위탁계약 수의대상에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추가
- 위탁료 산출기준 근거 마련 및 계약기간 연장(1년 → 5년이내)

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일원화 및 요금 현실화(안 제4조)

- 읍면동지역 30분당 500원 적용, 정기관 요금 상향조정

다. 주차장 확대 설치를 위한 기준강화(안 제10조의3, 제11조의3, 제12조, 제13조)

- 교통유발이 큰 용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구 분	당 초	개정안
위락시설	- 시설면적 <u>100m²</u> 당 1대	- 시설면적 <u>70m²</u> 당 1대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 시설면적 <u>150m²</u> 당 1대	- 시설면적 <u>100m²</u> 당 1대
운수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u>150m²</u> 당 1대	- 시설면적 <u>120m²</u> 당 1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u>200m²</u> 당 1대	- 시설면적 <u>135m²</u> 당 1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85m²이하 : <u>85m²</u> 당 1대 - 85m²초과 : <u>70m²</u> 당 1대	- 85m²이하 : <u>75m²</u> 당 1대 - 85m²초과 : <u>65m²</u> 당 1대
주택법시행령제10조에의한 원룸형 주택	- 세대당 <u>0.6</u> 대 (30m²미만 <u>0.5</u> 대)	- 세대당 <u>0.8</u> 대 (30m²미만 <u>0.7</u> 대)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직선거리를 300m → 200m이내, 도보거리 600m → 400m 이내로 단축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사업부지면적의 1.2% 이상 설치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대 이하는 기계식주차면 설치를 제한하고, 11대 이상은 50%이하만 설치. 단,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50면 이상 설치시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3% 이상 확보

라.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대상 확대(안 제17조)

- 노외 및 부설주차장 공공개방시 시설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내 주차장 조성 시 지원

마. 상위법 개정 및 조례개정 권고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의2)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주차장법

5. 관련부서 의견

부서명	법적근거	의견수렴 반영내용	비고
세무과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제5항	- 주차요금 50% 면제 대상 중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항목 수정 - 모범납세자 → 유공납세자 변경	반영
여성가족과	[법 제6조] 조례 제10조의3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 여성 및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 반영 - 설치대상 : <u>주차면수 50면이상 노상·노외·부설주차장</u> - 설치기준 : <u>3%이상</u>	반영
도시과	[법 제12조의3] 조례 제11조의3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최소규모를 지정 - 설치대상 : <u>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u> - 설치기준 : <u>사업부지 면적의 1.0%이상</u>	반영
건축과	조례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3항	-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규모 확대 10대이하 제한, 50% 이내로 제한, <u>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내 제한</u>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85㎡이하(65㎡ 1대), 85㎡초과(70㎡ 1대)	수정 반영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 31. ~ 2. 20.) 결과 : 주민의견 제출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 26.(여성가족과-3521호)
- 소비자정책 심의필 : 2018. 1. 30(경제진흥과-54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 30.(전략기획과-1139호)
- 규제개혁 심의필 : 2018. 2. 26.(전략기획과-235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 31.(순천시 공고 제2018-239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
4.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 정 방 법	위 탁 료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제3호, 제4호의 경우	수의계약	위탁료 산출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1천만원이하 소액일 경우 일시납 가능)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차장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임야, 잡종지, 주차장 등일 경우에는 인근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수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위반한 경우 : 실제 주차요금의 2배부터 4배까지

③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중화운동부상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

4.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5.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가 운전한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⑤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을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등)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판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③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주차장관리자와 사전에 계약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당 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폭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서에서 상시 상용하는 순찰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별표 5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 수요의 장기 예측

제11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4.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순천시 관할구역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로 한정한다.

1. 2단 단순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2.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

3. 2단 경사PIT식 기계식주차장치
4. 2단 승강PIT식 기계식주차장치
5. 2단 승강횡행식 기계식주차장치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표지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2이상의 필지는 평균가액

으로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20년 이내로 하되, 기간이 만료될 시는 기간 만료당시의 시설 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재계약한다.

제16조의2(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④ 시행령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원

제1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2.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3.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동지역 및 읍면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4.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공공개방을 위해 주차장을 정비 및 설치하는 경우
5.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용도 제한)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시설물 변경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된 경우
3. 공사 완료 후 담장 경계에 임의로 대문,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5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별표 1]

위탁료 산출 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노상주차장

$1\text{대당 주차구획면적(m}^2\text{)} \times \text{면수} \times \text{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m}^2\text{)} \times 5/100 \times (\text{점용일수}/365) \times \text{지수} \times (1\text{일평균 운영시간}/24\text{시간})$

2. 노외주차장

$\text{점용면적(m}^2\text{)} \times \text{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m}^2\text{)} \times 25/1,000 \times (\text{점용일수}/365) \times \text{지수} \times (1\text{일 평균 운영시간}/24\text{시간})$

〈비 고〉

1. 지수 =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 기준)
2. 노외주차장 평균운영시간 : 12시간
3. 개별공시지가(m²)는 인근지역 토지 8개소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4. 최초 1시간이내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제공 시간만큼의 이용차량 비율을 조사하여 위탁료 산정시 반영한다.
5.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위탁료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1일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1급지	소형	500원	8,000원	80,000원 이하
	대형	700원	11,000원	100,000원 이하
2급지	소형	400원	5,000원	50,000원 이하
	대형	600원	8,000원	80,000원 이하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운영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30분 미만일지라도 30분으로 본다.
4. 급지의 구분은 1급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1급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5.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6. 1회 주차요금은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7. 시장은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1시간이내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8.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운수시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당 1대(시설면적/135㎡)
5.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다만, 읍면의 녹지지역인 경우는 2분의 1을 완화하여 설치 가능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 75㎡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7.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1만㎡ 이상 공장(아파트형은 제외)의 경우에는 450㎡당 1대
10.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2.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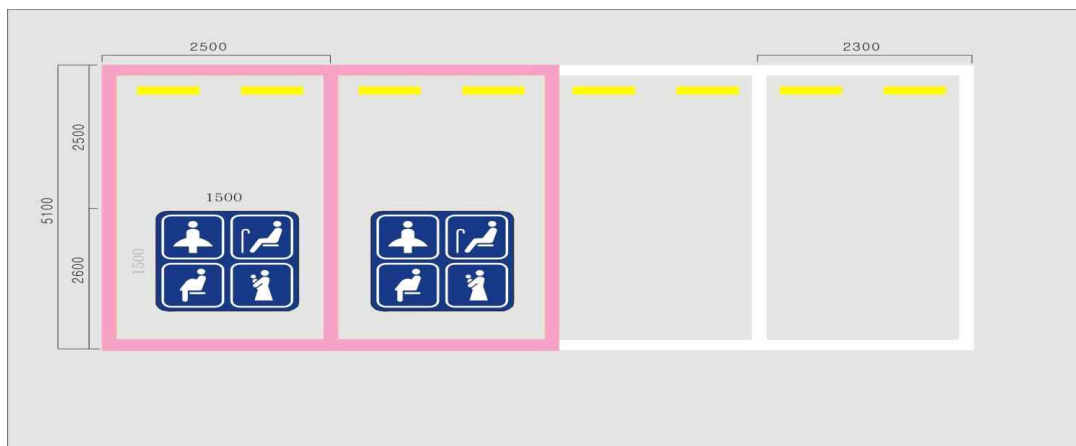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1. 설 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 설 물	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1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50%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30%이하까지 설치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	
4. 예 외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10조의3 관련)



〈주차구획선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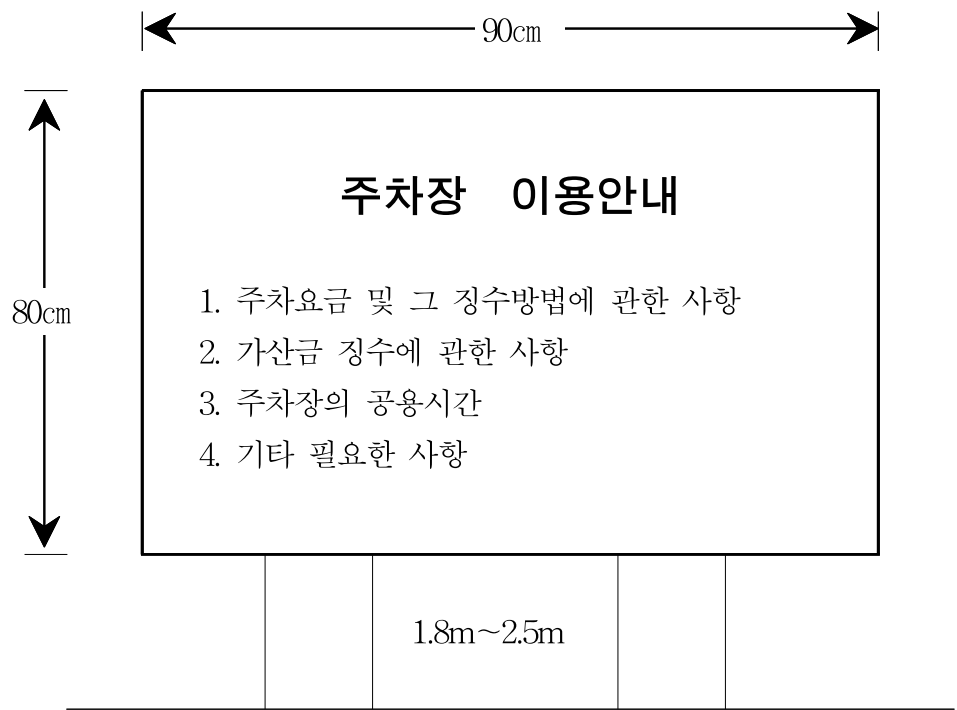


※비고

1. 색: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여성·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바탕은 노랑색과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랑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노 외 주 차 장	알루미늄판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7조제2항 관련)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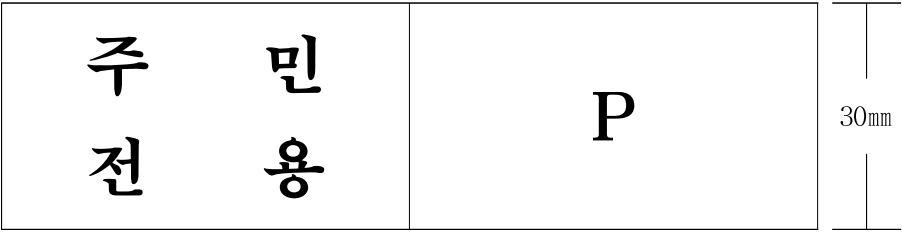
재 료 : 알미늄판

색 채 : 청색(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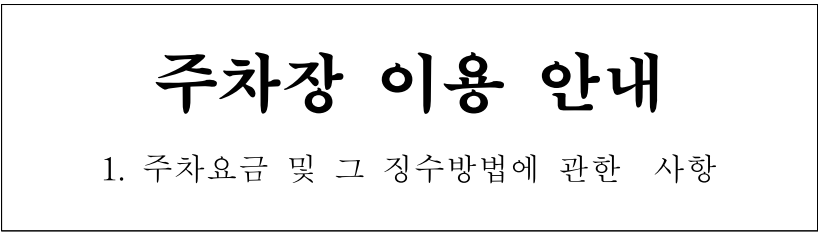
흰색(글씨)

전용주차장 표지판 (제10조2제3항 관련)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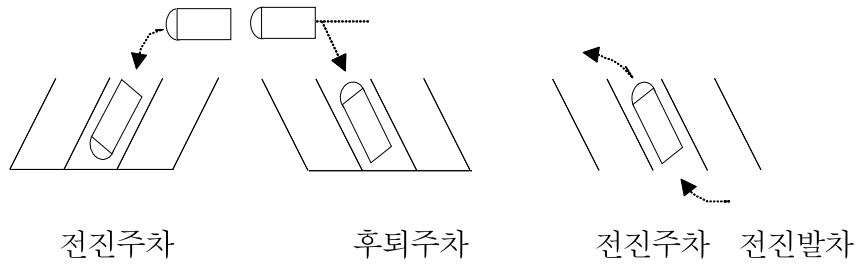
(뒷 면)



- 재 료 : 알루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설 치 위 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1.8~2.5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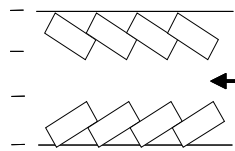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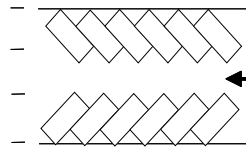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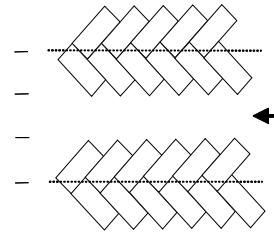
가. 3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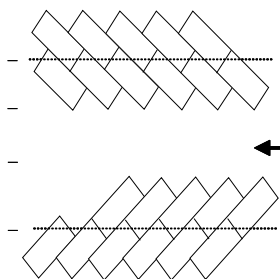
나. 45°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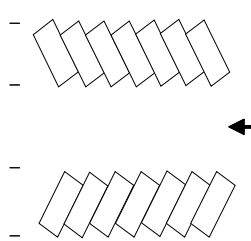
다. 45°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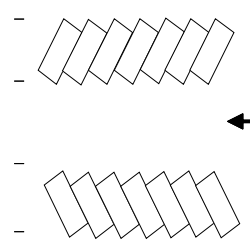
라. 45°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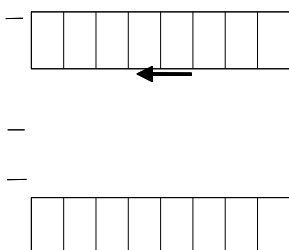
마. 60°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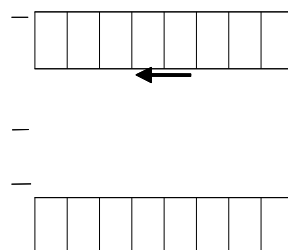
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



아. 90°후퇴주차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6조제1항 관련)

(앞 면)

9cm

6cm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순 천 시 장 인

비고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 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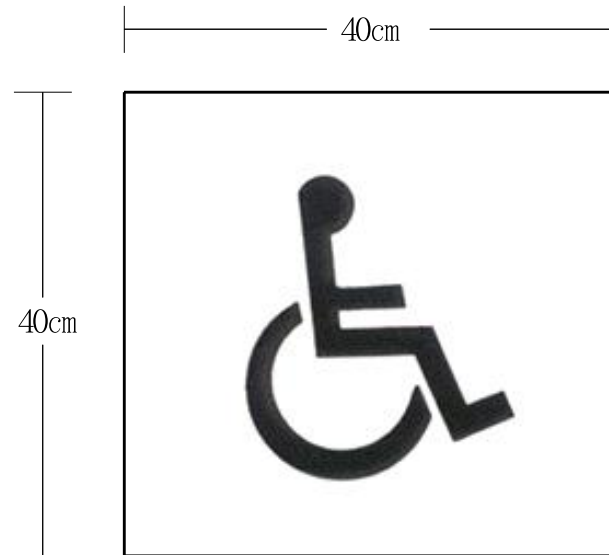
[별지 제8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 (제16조제1항 관련)

[illegible]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전용 주차장 표지 (제16조2제3항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 지 판 : 가로 40cm × 세로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상용한다.

3.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cm)와 휠체어를 탄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공공개방을 위해 주차장을 정비 및 설치하는 경우

5.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2023년 이후
총비용(a-b)	720	120	120	120	120	120	120
세입(a)							
세출(b)	720	120	120	120	120	120	1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2023년 이후
합 계	720	120	120	120	120	120	120
국 비							
도 비							
시 비	720	120	120	120	120	120	120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
- 산출내역 : 120백만원/년(연평균 15회 지원)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 : 최고 700만원 × 10개소
 -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 최고 1,000만원 × 5개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이후
시비	120	120	120	120	120	120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순천시 도시건설국 교통과 과장 황태주 (☎ 749-5533)
팀장 신동철 (☎ 749-5907)
담당자 김재선 (☎ 749-5909)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5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외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여 관내 식당, 상점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만국가정원 관람료 일부를 개정하고, 성인 개인과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
 - 제4조(관람료 등) : 제2항 신설, 별표 1 개정
- 시설용도 변경된 ‘정원연회장’을 시설 사용허가 범위에서 삭제하고 사용신청서, 사용료 등 관련 내용 정비
 - 제10조(시설 및 사용범위) : ‘정원연회장’ 삭제
 - 제11조(사용허가) 2항 : 별지서식(사용신청서) ‘연회장’을 ‘촬영’으로, ‘정원연회장’을 ‘영화’, ‘드라마’, ‘그외’로 변경
 - 제12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1항 : 별첨 3 ‘정원연회장’ 삭제

3. 개정규정안 : 별첨

5. 관련법령 : 해당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별첨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2. 7. ~ 2. 2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2. 6.(여성가족과-508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2. 6.(국가정원운영과-150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2018. 2. 6.(전략기획과-1529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2. 6.(전략기획과-152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2. 7.(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공고 제2018-4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을 관람료 수입으로 하고,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한방체험센터, 정원연회장, 전시시설”을 “한방체험센터, 전시시설”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한) 제4조제2항은 2019. 12. 31.까지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을 관람료 수입으로 하고,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은 불가함

※ 성인 개인,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3,000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제공

< 비 고 >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한) 제5조제2항은 2019. 12. 31.까지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 순천시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성인 개인,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3,000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제공

< 비 고 >

1. “어린이”란 초등학교생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3]

사 용 료(제12조 관련)

구 분		오전	오후	1일
대 회 의 장	컨퍼런스홀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전 시 장	갯지렁이전시관	—	—	72,000원
공 연 장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15,000원	20,000원	35,000원
	동천갯벌공연장	75,000원	110,000원	180,000원

행사 규모(관람석)		1,000석 미만	1,000석 이상 2,000석 미만	2,000석 이상
공 연 장	잔디마당	7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 단, 품격 있는 행사만 허용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승인을 결정 한다.				

구 분		평일	토공휴일	비고
회 의 시 설	소회의실1	25,000원	40,000원	2시간 기준
	소회의실2	15,000원	20,000원	〃
	소회의실3	70,000원	110,000원	〃
	소회의실4	40,000원	60,000원	〃
입체영상관		100,000원		3시간기준
부 대 시 설 (냉·난 방)		5,000원		1시간 기준

※ 습지센터 소회의시설 및 동문 소회의시설은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10,000원 추가

※ 입체영상관은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20,000원 추가

☐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등

구 분	영 화	드 라 마	영화, 드라마 이외의 촬영	예식	비 고
사용료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일 기준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순천만국가정원 MICE(마이스)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illegible]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관람료 등) ①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관람료 등) ① ----- -----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을 관람료 수입으로 하고,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 및 사용범위) ① 시설은 순천만국제 습지센터(입체영상관, 컨퍼런스 홀, 소회의실), 한방체험센터, 정원연회장, 전시시설, 회의시설, 야외시설 등을 말한다.	제10조(시설 및 사용범위) ① ----- ----- 한방체험센터, 전시시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r><tr><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tr><td>개인</td><td>8,000원</td><td>6,000원</td><td>4,000원</td></tr><tr><td>단체</td><td>6,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tr><td>순천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무료</td></tr><tr><td>1년권</td><td colspan="3">•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td></tr></table>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r><tr><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tr><td>개인</td><td>10,000원</td><td>6,000원</td><td>4,000원</td></tr><tr><td>단체</td><td>8,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tr><td>순천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무료</td></tr><tr><td>1년권</td><td colspan="3">•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td></tr></table>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 순천시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비고> 1. “어린이”란 초등학교생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 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 의 사람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 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 순천시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u>성인 개인,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3,000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제공</u> <비고> 1. “어린이”란 초등학교생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 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 의 사람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 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3] 사 용 료(제12조 관련)					[별표 3] 사 용 료(제12조 관련)						
구 분		오전	오후	1일	구 분		오전	오후	1일		
대회의장	컨퍼런스홀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대회의장	컨퍼런스홀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전 시 장	갯지렁이전 시관	—	—	72,000원	전 시 장	갯지렁이전 시관	—	—	72,000원		
공 연 장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15,000원	20,000원	35,000원	공 연 장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15,000원	20,000원	35,000원		
	동천갯벌공 연장	75,000원	110,000원	180,000원		동천갯벌공 연장	75,000원	110,000원	180,000원		
행사 규모(관람석)		1,000석 미만	1,000석 이상 2,000석 미만	2,000석 이상	행사 규모(관람석)		1,000석 미만	1,000석 이상 2,000석 미만	2,000석 이상		
공연장	잔디마당	7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공연장	잔디마당	7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 단, 품격 있는 행사만 허용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승인을 결정 한다.					※ 단, 품격 있는 행사만 허용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승인을 결정 한다.						
구 분		평일	토·공휴일	비고	구 분		평일	토·공휴일	비고		
회의시설	소회의실1	25,000원	40,000원	2시간 기준	회의시설	소회의실1	25,000원	40,000원	2시간 기준		
	소회의실2	15,000원	20,000원	”		소회의실2	15,000원	20,000원	”		
	소회의실3	70,000원	110,000원	”		소회의실3	70,000원	110,000원	”		
	소회의실4	40,000원	60,000원	”		소회의실4	40,000원	60,000원	”		
입체영상관		100,000원		3시간기준	입체영상관		100,000원		3시간기준		
정원연회장		100,000원		—	부 대 시 설 (냉 · 난 방)		5,000원		1시간기준		
부 대 시 설 (냉 · 난 방)		5,000원		1시간기준	※ 습지센터 소회의시설 및 동문 소회의시설은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 당 10,000원 추가 ※ <u>입체영상관</u> 은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20,000원 추가						
※ 습지센터 소회의시설 및 동문 소회의시설은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 당 10,000원 추가 ※ <u>입체영상관 및 정원연회장</u> 은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20,000원 추가					□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등						
□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등					□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등						
구 분	영 화	드 라 마	영화, 드라마 이외의 촬영	예식	비 고	구 분	영 화	드 라 마	영화, 드라마 이외의 촬영	예식	비 고
사용료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일 기준	사용료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일 기준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 간을 말한다.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 간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별지 서식] (제11조 관련)				[별지 서식] (제11조 관련)			
순천만국가정원 MICE(마이스)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순천만국가정원 MICE(마이스)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청기관 (단체명/부서명)			신청인	신청기관 (단체명/부서명)		
	성명(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행사명			참가인원				
행사내용				행사내용			
사용일시		20년 월 일 시 분 ~ 20년 월 일 시 분 (시간) *본 행사 시작 시간 (일/시) : ※ 대관시간에 준비 및 철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일시		20년 월 일 시 분 ~ 20년 월 일 시 분 (시간) *본 행사 시작 시간 (일/시) : ※ 대관시간에 준비 및 철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시설	기본시설	회의실	☐ 컨퍼런스홀 ☐ 소회의실1(습지센터내) ☐ 소회의실2(습지센터내) ☐ 소회의실 3(동문) ☐ 소회의실 4(동문)	사용시설	기본시설	회의실	☐ 컨퍼런스홀 ☐ 소회의실1(습지센터내) ☐ 소회의실2(습지센터내) ☐ 소회의실 3(동문) ☐ 소회의실 4(동문)
		연회장	☐ 정원연회장			촬영	☐ 영화 ☐ 드라마 ☐ 그외
		영상관	☐ 입체영상관			영상관	☐ 입체영상관
	전시실	☐ 갯지렁이 도서관	전시실		☐ 갯지렁이 도서관		
야외시설	☐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 동천 갯벌공연장 ☐ 잔디마당	야외시설	☐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 동천 갯벌공연장 ☐ 잔디마당				
부대시설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마이크 ☐ 음향장비 ☐ 기타()	부대시설		☐ 빔프로젝터 & 스크린 ☐ 마이크 ☐ 음향장비 ☐ 기타()		
변경사유 (세부적으로)				변경사유 (세부적으로)			
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휴대폰 : 이메일 : 20년 월 일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휴대폰 : 이메일 : 20년 월 일 순천시장 귀하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이용 신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이용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람이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신청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이용에 보호자로서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람이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신청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이용에 보호자로서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신청인 (인)			

현행	개정안
(다른 조례의 개정)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 등)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을 관람료 수입으로 하고,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r><tr><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tr><td>개인</td><td>8,000원</td><td>6,000원</td><td>4,000원</td></tr><tr><td>단체</td><td>6,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tr><td>순천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무료</td></tr><tr><td>1년권</td><td colspan="3">•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td></tr></tabl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함 <비고>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 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 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 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 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 의 사람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 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th></tr><tr><th>성인</th><th>청소년·군인</th><th>어린이</th></tr><tr><td>개인</td><td>10,000원</td><td>6,000원</td><td>4,000원</td></tr><tr><td>단체</td><td>8,000원</td><td>5,000원</td><td>3,000원</td></tr><tr><td>순천시민</td><td>2,000원</td><td>1,500원</td><td>무료</td></tr><tr><td>1년권</td><td colspan="3">•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td></tr></tabl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함. ※ 성인 개인,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3,000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제공 <비고>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 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 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 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 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 의 사람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순천만국가정 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8,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1년권	• 성인 : 30,000원, 청소년·군인 : 20,000원, 어린이 : 10,000원 • 순천시민 : 10,000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순천사랑상품권 제공 가능
- 관람료를 성인 개인은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성인 단체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성인 개인과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자에게 3,000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사랑상품권 3천원권을 구입하여 순천만국가정원 현장매표소와 무인발권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관람권을 구입한 성인 개인 관람객과 성인 단체 관람객들에게 제공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 비용 (a-b)	계	-5,618,453	-1,038,533	-1,144,980	-1,144,980	-1,144,980	-1,144,980
	국가정원	-3,438,082	-640,946	-699,284	-699,284	-699,284	-699,284
	순천만	-2,180,371	-397,587	-445,696	-445,696	-445,696	-445,696
세입(a)	계	12,849,871	2,385,391	2,616,120	2,616,120	2,616,120	2,616,120
	국가정원	7,878,077	1,473,337	1,601,185	1,601,185	1,601,185	1,601,185
	순천만	4,971,794	912,054	1,014,935	1,014,935	1,014,935	1,014,935
세출(b)	계	18,468,324	3,423,924	3,761,100	3,761,100	3,761,100	3,761,100
	국가정원	11,316,159	2,114,283	2,300,469	2,300,469	2,300,469	2,300,469
	순천만	7,152,165	1,309,641	1,460,631	1,460,631	1,460,631	1,460,631

○ 1차년도(4월~12월) : 순천사랑상품권 구입비 3,423,924천원

○ 2차년도 이후 : 순천사랑상품권 구입비 3,761,100천원(매년)

○ 사업비 산정 기준

- 2017년 외지 성인 개인 및 단체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3,000원권 상품권 구입비를 세출로 산정
- 상품권 구입비 3,000원 중 2,000원은 성인 개인과 성인 단체 관람료를 인상하여 세외수입(수입)으로 충당하고, 1,000원은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업비 산정
- 성인 개인(8,000원→10,000원), 성인 단체(6,000원→8,000원) 관람료 인상으로 50% 할인 관람료(남해안남중권, 교류도시, 그린카드) 1,000원 인상분 세외수입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18,468,324	3,423,924	3,761,100	3,761,100	3,761,100	3,761,100
국 비						
도 비						
시 비	18,468,324	3,423,924	3,761,100	3,761,100	3,761,100	3,761,100

- 성인 개인과 성인 단체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제공할 순천사랑상품권 구입비는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사업 추진
- 단, 순천사랑상품권 구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는 관람료에서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수입금을 입장료 수입으로 하고, 상품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구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입비로 지급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출액(2018년) : 3,423,924천원
- 산출근거 :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구 분	금액(천원)	산출기초
순천사랑상품권 구입	3,423,924	3천원권 × 1,141,308장

- 2018년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성인 개인 및 단체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산정

○ 비용추계 관련 관람객 현황

- 상품권 구입 대상자 수 :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단위 : 명)

기 간	계	2018.4~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관람객 수 (성인 개인+단체)	6,156,108	1,141,308	1,253,700	1,253,700	1,253,700	1,253,700

- 2017년 성인 개인 및 단체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세외수입 관련 대상자 수 :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단위 : 명)

기 간	계	2018.4.~1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인 50% 할인 관람객 수	537,655	102,775	108,720	108,720	108,720	108,720

- 2017년 성인 개인 및 단체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산정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illegible]

순천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75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3. 9.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정비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위원회 비상설화

2. 주요내용

- 문학관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안 제21조)
 - 제21조 중 “3년” 을 “5년” 으로 한다
- 문학관 위원회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8조, 제29조)
 - 제28조 중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를 신설한다.
 - 제29조 (위원의 임기)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10. 23. ~ 2018. 11. 13.) : 의견제출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5.(여성가족과-3607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7. 10. 17.(전략기획과-138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7. 10. 23.(순천시공고 제2017-8호)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 본문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3년” 을 “5년” 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탁의 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정지 또는 개선명령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2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중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을 “의원”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 ② (생략)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 <u>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 ----- -----, <u><후단 삭제></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u>3년</u>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기간) ----- <u>5년</u> ----- -----.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의 정지 등) ----- ----- <u>그 위</u> <u>탁을 정지 또는 개선명령하거나 그 밖에</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하였을 때</u>	<u><삭제></u>

현행	개정안
4. ~ 6. (생략) 제28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u>의장이 추천한 시의원</u> 1명 나. (생략) <u><신설></u> 제29조(위원의 임기) <u>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u>의원</u> ----- 나.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u> <u><삭제></u>